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2.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년 4월 8일, 정점식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2년 4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2. 8. 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2. 9. 14.)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2. 9. 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점식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경영이양직불제는 어업의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경영이양직불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강화 등 선제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제도도입 초기 계획 대비 신청저조에 따른 제도의 개선·보완을 통한 경영이양직불제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용하여 현행 신청연령을 확대·완화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신청기관의 변경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신청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정연수)

개정안은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 어촌계 인가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어촌계의 어촌계원은 어촌계 인가시점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을 추가하고,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신청서를 제출받고 적격여부를 확인하며 선정결과를 신청 어업인에게 알리는 주체를 읍·면·동장에서 특별자치도지사등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현재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법’이라 함) 제14조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 제도가 2021년 3월부터 시행되어 연도별 지급 계획 인원은 300명(매년 신규신청 기준)이나, 2021년 6명·2022년 8월 기준 8명으로 총 14명과의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하여 지급 중임.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계획인원 대비 실제 집행인원이 적은 사유는, ① 어촌계원으로서 얻을 수 있는 배당·어업보상·어업활동 등 혜택 대비 낮은 직접지불금 지급, ② 75세~80세 이상 어촌계원은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나 사업대상에 제외되며, 70세 이상은 단기간 지원금 수령으로 참여 기피, ③ 55세이하의 자격조건에 부합되는 후계어업인 구인 애로, ④ 경영이양직불제 신청 읍·면·동 사무소가 195개소로 신청접수 업무 전문성 한계 및 관리애로(농림부의 경우 농어촌공사 전담 추진) 등이 있다고 밝힘.

이에 개정안은 제도도입 초기 계획 대비 신청저조에 따른 제도의 개선·보완을 통해 경영이양직불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는 어업의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이양직불제의 취지 달성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임.

특히, 개정안 제14조제1호 관련,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 어촌계 인가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어촌계의 계원은 전국 3,343명으로, 개정안 통과 시 어촌계 인가시점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보유한 신규 어촌계의 계원에게도 동 개정 내용이 적용가능한 바, 경영이양 직불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 제15조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경영이양직불제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전담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의 경영이양 직불제의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읍·면·동장이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나 선정하는 주체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으로 이분화되어 있어,

각 읍·면·동 별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관련 전문인력의 부재에 따른 전문성의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특별자치도지사 등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어업인에 대한 전문성이나 행정효율성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부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시행일 규정과 관련하여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법 시행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6개월의 시행유예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안부칙 제2조제1호의 자격 유지 기간 ‘등’에서 자격 유지기간 외에 필요한 바가 없으므로 ‘등’을 삭제하는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이양수)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음